

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5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8. 7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종량기(RFID) 설치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일원화와 재량·감경 규정 삭제

2. 주요내용

- 가.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종량기(RFID) 설치 권고 근거 마련(안 제13조제 2항)
- 나.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재량 행위 삭제(안 제21조)
- 다. 과태료 부과 기준 절차 일원화 및 감경 규정 삭제(안 제22조)
- 라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3. 근거법규

- 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- 나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: 2018. 4. 12. ~ 5. 3.(의견없음)